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업무 위탁기관 신설〉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33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13133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의5 신설)	3
2.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업무 위탁기관 신설 등(안 제21 조의4)	6
※ 참고자료	1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131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외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의5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u><신설></u>	<u>제21조의5(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 정</u>

	<u>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자체가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배회차량 감소 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에, 전국 지자체 중 상당 수의 지자체가 이미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특히 주차정보시스템의 효용성이 큰 특·광역시·기초자치단체 중 대부분은¹⁾ 주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다만, 안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조와 관련하여, 주차정보시스템 구축비 지원(국비 보조율 50%)을 포함하는 종전의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 2022. 12.14. 시행)」 시행에 따라 지방세 인상과 함께 지자체로 이양된 전환사업에 포함되어,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²⁾에서 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국비

1) 2025년 10월 현재 특·광역시의 76개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 동구를 제외한 75개 단체가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자료 : 국토교통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효과와 자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1. 참조)

나. 국토교통부 의견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차정보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주차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수집·제공 중임으로 지자체의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능 규정 신설은 실익이 없음.

또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23년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므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부의 비용 보조 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2.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업무 위탁기관 신설 등 (안 제21조의4)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가 주차장 정보망의 기능에 지자체의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연계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주차장 정보망의 정보를 일반 국민과 주차정보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1항제4호·제4항제2호·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계에 관한 사항</u> <u>5. (현행 제4호와 같음)</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자에게----- -----. -----.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 정보망을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과 주차정보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 -----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주차정보 제공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21조의4에 근거하여 전국의 주차장에 대한 공간 및 운영정보를 국가 플랫폼으로 통합·개방함으로써 교통혼잡, 주차난 해결 및 주차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건축행정시스템³⁾, 각 지자체의 주차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차정보를 수집·관

3) 전국 공·민영 부설주차장 정보(주소, 전체면수, 주차장 형태 등) 수집

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전국에 분산된 주차장 공간정보를 국가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개방하여 교통혼잡, 주차난 해결 및 주차산업 발전 유도

☐ 추진내용

건축행정시스템, 지자체 주차관리시스템 및 지자체 소유 주차장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등

☐ 사업기간 2020~계속

☐ 2025년도 예산 193백만원(주차수급 실태조사 시스템 개발 예산 제외)

☐ 사업시행주체 (주관)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주차장 정보망(국가)과 주차정보시스템(지자체) 간의 연계, 수집된 주차정보의 민간 개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주차장 정보망의 기능에 지자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사항 추가에 관한 검토

안 제21조의4제1항에서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주차장 정보망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1조의54)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장’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구축·운영’을 제외한 주차장 정보망(국가)과 주차정보시스템(지자체) 간의 ‘연계’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업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업무 위탁기관 신설에 관한 검토

현재 주차장 정보망(국가) 구축·운영 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⁵⁾, 안 제21조의4제4항제4호에서는 주차장 정보망(국가)과 주차정보시스템(지자체)의 연계 업무⁶⁾에 대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협회”)에⁷⁾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신설하려는 취

4) 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5(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주차장법」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안 제21조의4제1항제4호(“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의 업무 중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지자체장의 업무이므로 위탁 대상은 이를 제외한 연계 업무만 해당함.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

지로 보임. (참고2. 참조)

이에 대해서는 현 위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1년부터 주차장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주차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정보망(국가)은 주차정보시스템(지자체) 외에 정부의 건축행정시스템⁸⁾ 등 주차장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과도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일부 기능만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및 시스템의 체계성·효율성·보안성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가 주차장 정보망 체계도 >



자료 : 국토교통부

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전국 공·민영 부설주차장 정보(주소, 전체면수, 주차장 형태 등) 수집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국가의 주차장 정보망과 지자체의 주차정보시스템 연계는 2021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업무로서, 이를 한국 지능교통체계협회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정보 연계의 연속성 및 안전성, 기존 인프라·데이터 이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존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 주차장 정보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실에 위치하고 있어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 이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I. 전환사업 개요

□ 배 경

-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이라 함)
 - 1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3.56조원,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2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2.25조원,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운영기준

- 전환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영
-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다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II. 재원보전의 기본방향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 *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보전방안에 대하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전기준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이 원칙이며, 일부 사업은 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
 -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 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 보전방법

-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행안부→자치단체)

- 자치단체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별 최종 보전규모 및 관련자료 송부(행안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능이양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납입관리자→자치단체)

□ 2-2차 사업(2023년 이양사업) : 15개 세부사업

○ 시도 사업

분야	부처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명	개수
		계	15	51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지원	- 주차환경개선지원	1
※ 기타 생략					

참고2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현황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설립일) 1999년 4월 7일

□ (설립목적)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 조성

*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통합교통체계법 §2)

→ 도로와 차량 등 교통 환경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이용자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 (예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안내(버스도착안내, 네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교통량에 따라 바뀌는 신호등, 하이패스 등

□ (설립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업무(통합교통체계법 §92)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조사·연구, ② 홍보·교육, ③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④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사업*

* 도로분야 ITS 표준화전담기관('10. 5. 31),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전담기관('10. 6. 23),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14. 5. 20)

자료 : 국토교통부